

의안번호	2206681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5.1.10.
추계번호	24B607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강수계 안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경우,
- (시나리오 1)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1,143억 4,000만원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 5,717억원(연평균 1,14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 2)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229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 1,147억 5,000만원(연평균 2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1):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민지원사업 (안 제11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1,143.4	1,143.4	1,143.4	1,143.4	1,143.4	5,717	1,143.4
시나리오 2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	229.5	229.5	229.5	229.5	229.5	1,147.5	229.5

주: 대상 면적은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예외적 공장설립승인지역 면적 포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 (주민지원사업)	○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항) 4. 한강수계 안에서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의무지출
2	안 제12조 (기술 및 재정지원 등)	○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음	재량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 (주민지원사업)	○	○ 환경부 제출자료 및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함
2	안 제12조 (기술 및 재정지원 등)	×	○ 한강수계 내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사업장)의 수와 지원금의 수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수도법」 제7조의2¹⁾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²⁾ 설립을 제한하고 있음(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
- 다만,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의 일정 기준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을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하고 있음

1)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이면 모두 공장으로 분류

[표 2]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요

하천수, 호소수, 강변여과수 등 모든 취수원(지하수 제외)	지하수
○ 제한범위 : 유하거리 10~20km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 1일 20만톤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상류 20km이내 · 1일 20만톤 미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상류 10km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시 · 취수지점 상류 유하거리 15km이내, 하류 1km이내	○ 제한범위 －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
○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취수지점상류 7km 초과 － 폐수배출시설·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허가 업체가 아닐 것 － 오수에 대한 일정 기준* 준수시 *일정기준: 가. 오수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충족 시 다. 강변여과수 취수 시 라. 오수발생량이 10m³/일 미만 시	
○ 공장설립승인지역(2호): 취수지점상류 4km~7km － 소규모 생계형 13개 업종*으로서 일정기준 모두 준수시 *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기타 곡물 가공업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인삼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일정기준: 가.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사용·발생하지 않을 것 나.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다.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것 라. 사용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일 것 마. 공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미만일 것 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일 것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본 추계에서는 안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주민지원사업³⁾ 대상지역으로 추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지원사업비⁴⁾ 중 간접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사업비⁵⁾ 추계

3) 법 시행령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4) 법 시행령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99.8.9) 전부터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온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원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표 3]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개요

주민지원사업	사업내용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일반지원 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
간접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	•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심의하 여 인정하는 사업	특별지원사업비	

자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바탕으로 정리

- 또한 본 추계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표 4]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계 시나리오

(단위: km ²)			
	추계 대상 지역	조건	대상 면적
시나리오 1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의 예외적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면적 포함	3,518.53
시나리오 2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 (=전체-예외적 승인지역)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의 예외적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면적 불포함	706.19

주: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면적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5) 특별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공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대상지역 포함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전체를 특별지원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대상은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간접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사업비)로 가정
- 추계방법은 최근 3년(2021~2023년) 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단위면적(1km²) 당 평균지원금액을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에 곱하여 추계
 - (단위 면적 당 평균지원금액) 최근 3년(2021~2023년) 간 한강수계 총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비 평균금액은 537억 6,5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평균금액은 166억 9,800만원
 - 따라서 단위면적(1km²)당 간접지원사업 평균금액은 24.8백만원/km² 특별지원사업 평균금액은 7.7백만원/km²
 - 이때, 단위면적 당 평균지원금액 및 추계대상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5] 최근 3년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km², 백만원, 백만원/km²)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대상 주민 수(A)	20,803	19,764	18,966	19,844
대상 면적(B)	2,168.66	2,168.22	2,168.08	2,168.32
총 주민지원사업비(C=D+G)	77,215	82,942	84,043	81,400
• 일반지원사업비(D=E+F)	61,772	65,781	66,552	64,702
- 직접지원사업비(E)	10,118	11,288	11,405	10,937
- 간접지원사업비(F)	51,654	54,493	55,147	53,765
• 특별지원사업비(G)	15,443	17,161	17,491	16,698
단위면적(1km ²) 당 간접지원사업비(F/B)	23.8	25.1	25.4	24.8
단위면적(1km ²) 당 특별지원사업비(G/B)	7.1	7.9	8.1	7.7

자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제출자료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본 추계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 (시나리오 1)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 3,518.53km²)
- (시나리오 2)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 (= 전체 지역 -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예외적 승인지역 = 706.19km²)

□ 추계결과, 한강수계 안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경우,

- (시나리오 1)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1,143억 4,000만원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 5,717억원(연평균 1,14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1): 2026~2030년

(단위: km², 억원, 백만원/km²)

시나리오 1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상 면적(A)		3,518.5	3,518.5	3,518.5	3,518.5	3,518.5	—	—
간접 지원비	단위면적당 간접지원 사업 평균금액(백만원 B)	24.8	24.8	24.8	24.8	24.8	—	—
	소계(C=A×B)	872.5	872.5	872.5	872.5	872.5	4,362.5	872.5
특별 지원비	단위면적당 특별지원 사업 평균금액(백만원 D)	7.7	7.7	7.7	7.7	7.7	—	—
	소계(E=A×D)	270.9	270.9	270.9	270.9	270.9	1354.5	270.9
합계(F=C+E)		1,143.4	1,143.4	1,143.4	1,143.4	1,143.4	5,717	1,143.4

주: 대상 면적은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예외적 공장설립승인지역 면적 포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시나리오 2)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229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 1,147억 5,000만원(연평균 2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1): 2026~2030년

(단위: km², 억원, 백만원/km²)

시나리오 2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상 면적(A)		706.2	706.2	706.2	706.2	706.2	—	—
간접 지원비	단위면적당 간접지원 사업 평균금액(백만원 B)	24.8	24.8	24.8	24.8	24.8	—	—
	소계(C=A×B)	175.1	175.1	175.1	175.1	175.1	875.5	175.1
특별 지원비	단위면적당 특별지원 사업 평균금액(백만원 D)	7.7	7.7	7.7	7.7	7.7	—	—
	소계(E=A×D)	54.4	54.4	54.4	54.4	54.4	272	54.4
합계(F=C+E)		229.5	229.5	229.5	229.5	229.5	1147.5	229.5

주: 대상 면적은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예외적 공장설립승인지역 면적 포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과거 실적치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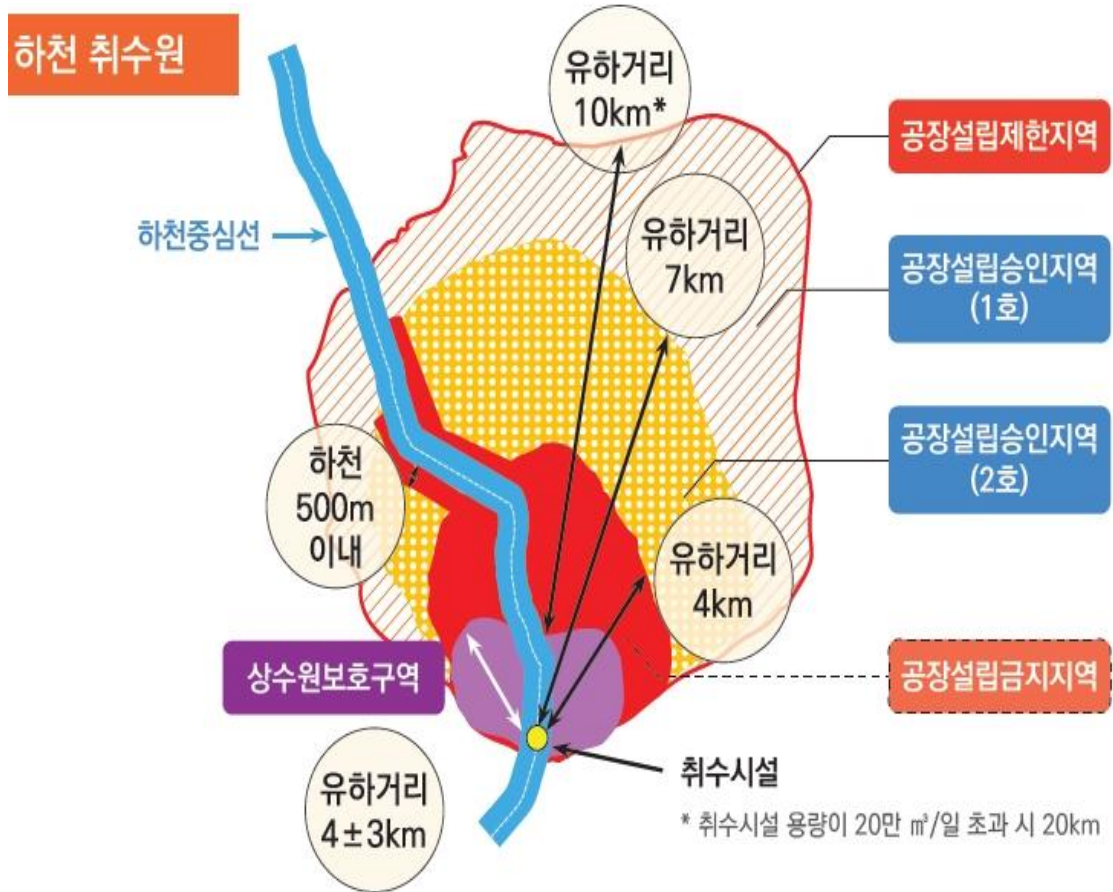
[참고자료 1]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환경부 제출자료)

(2024. 12. 27. 기준, 단위: km²)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합 계		706.19	2372.69	439.65	3518.53
서울특별시	강동구	9.76	2.64	8.91	21.31
	광진구	5.01	0	0.2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강원도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	2.38	109.95
경기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	8.93	199.8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용인시	0	25.15	0	25.15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충청북도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제천시	0.22	71.05	0	71.27
	충주시	24.78	141.93	19.8	186.51

[참고자료 2]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예외적 공장설립승인지역 개념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